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313회 임시회

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
# 검 토 보 고 서

【의회사무국】



2025년 7월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#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(의회사무국)

2025. 7.
운영위원회

## 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(의회사무국)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제출일자: 2025. 7. 4.(금)
- 회부일자: 2025. 7. 4.(금)
- 검토기간: 2025. 7. 4.(금) - 7. 10.(목)

## 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## 3.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

-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
-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 반영
- 집행 사업에 대한 잔액 반영
- 효율적인 회의장 관리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반영

#### 4. 추경예산안 내역(의회사무국 소관)

가. 세입예산: 해당 없음

나.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, %)

구 분	제2차 추경예산안 (A)	제1차 추경예산 (B)	본예산	(A-B) 증 감 (C)	[C/B] 증감률(%)
의회사무국	4,766,453	4,749,774	4,705,943	16,679	0.35%
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	1,783,390	1,792,831	1,757,219	△9,441	△0.53%
합리적인 인사행정	7,682	7,682	7,682	-	-
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	397,677	397,677	397,677	-	-
인력운영비(의회사무국)	2,467,733	2,443,973	2,443,973	23,760	0.97%
기본경비(의회사무국)	109,971	107,611	99,392	2,360	2.19%

#### □ 주요 사업 증·감 내역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증감률(%)
본회의장 수화카메라 교체	5,625	6,000	△375	△6.25%
사무용 OA가구 구입	1,541	-	1,541	신규
비서실 컬러프린트 구입	940	950	△10	△1.05%
정책지원팀 냉난방기 대체구입	4,637	4,700	△63	△1.34%
대회의실 및 의장 탕비실 환경개선 리모델링	27,581	40,000	△12,419	△31.05%
의원 모니터 대체구입	563	600	△37	△6.17%
홈페이지 의정자료 정보공개 개편용역	3,500	-	3,500	신규
본회의장 속기석 책상 구입	505	550	△45	△8.18%
본회의장 속기석 칸막이 구입	785	850	△65	△7.65%
시간선택제암기제공무원(리급, 사진 및 영상촬영)	23,760	-	23,760	신규
직원 의자 대체 구입	892	-	892	신규

## 5. 검토의견

- 달서구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7억 6,6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,667만원 0.35% 증액 편성함.
- 주요 증액 내역으로 홈페이지 의정자료 정보공개 개편용역 350만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(사진 및 영상촬영, 임금 4월분) 2,376만원을 신규 편성함. 그 외에 집행 후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함.
-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(행안부 선거의 회자치법규과-1125호)에 따른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과 의정활동 홍보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따른 것으로 소요예산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.
- 향후 예산의 올바른 집행을 통해 과도한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# 관계법령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